

아마릴로 지역 한인회 정관

(최종 수정본: 2018 년 10 월 20 일)

제 1 장 총칙

1 조 명칭: 본회는 아마릴로 지역 한인회라 한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Amarillo Area).

2 조 목적: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한미사회간의 문화교류를 지향하고 한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권익을 보호/대변하고, 한인 교육 사업과 자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지원한다.

3 조 위치:

제 1 항: 본회 사무소는 텍사스 주 아마릴로에 둔다.

4 조 재정:

제 1 항: 본회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회원 회비, 정부 지원금, 행사 기금, 한인회 웹사이트광고 수익금, 연회비, 그리고 기부금 으로 충당 운영된다.

5 조 권한:

제 1 항: 본회는 본회 소유의 동산, 부동산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매매, 이전, 그리고 임대할 수 있다. 적절한 절차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인준하며, 텍사스주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 2 장 회원

1 조 자격 및 권리:

제 1 항 정회원: 텍사스주 아마릴로 지역 (아마릴로와 주변 도시) 거주자 18 세 이상 한인으로 텍사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1 년이상 텍사스주에 거주한 자로 한인회 등록을 마친자 만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선거권에 있어서, 회원이 아닌 자도 선거 당해년도 6월 30일 전까지 등록하면 회원의 자격을 부여 하며, 회원은 선거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 2 항 준회원: 텍사스주 아마릴로 지역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한국학생, 6 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향에 해당하지 않는 한인, 그리고 전향의 해당자와 결혼한 외국인으로, 발언권을 가진다.

제 3 항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협조하며 본회에 지대한 공로를 준 비회원으로 회장 추천 또는 이사회 인준으로 추대, 추천한다. 발언권을 가진다.

2 조 의무:

제 1 항: 본회 모든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2 항: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3 장 이사회

1 조 구성: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 1 명, 감사 2 명 그리고 3 명 이상의 이사들로 한다.

제 1 항: 이사장, 감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이사장 및 감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규칙을 따르고 임무를 수행할 자로 한인회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할 자여야 한다.

제 2 항: 이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한인 사회에 유능하고 덕망이 있으며 한인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의 추천 및 회원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제 3 항: 한인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국한하되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 4 항: 이사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 임기: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3 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성된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한인 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장의 필요시 개최된다.

4 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의 성립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 항: 한인회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제 2 항: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4 항: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 5 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6 항: 이사 회비 책정

제 7 항: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제 8 항: 총회에 상정할 안건 채택

제 9 항: 본 한인회 결원 이사의 선출, 임원의 해고 심의

제 10 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조 위원회:

제 1 항: 이사회는 하나 이상의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특별 위원회는 한명의 의장과 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본회 회장의 추천하에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의장은 위원들을 임명하고 그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임기와 상관없이 위원회는 지속된다.

제 2 항: 이사회는 본회 회칙 제 6 장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 장 임원

1 조 구성: 본 회의 임원진들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서기 외, 필요한 분과별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조 임기: 2 년이며, 결원시 회장 임명하에 보선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단, 회장의 결원 발생시 잔여임기 1 년 이내일 경우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고 그 이상의 경우 보궐 선거를 치른다.

3 조 직무:

1 항: 회장은 한인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2 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항: 총무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 임원과 유대를 갖고 회장을 보필하며 행정 통신 업무를 관장한다.

4 항: 재무는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기금을 지출하고 관리하며 정확한 기록과 함께 은행잔고서, 장부, 영수증, 그리고 청구서들을 보관하고 재정 보고를 매년마다 정기총회에 제출 보고한다.

5 항: 서기는 임원회의와 총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4 조 회장의 선출:

제 1 항: 회장의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임하며 진행한다.

제 2 항: 부회장 및 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조 회장의 자격:

제 1 항: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2 년이상 등록된 정회원으로, 아마틸로 지역에 3 년이상 거주한 30 세 이상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 2 항: 회장의 임기는 2 년이며 재임 및 연임 할수 있다.

6 조 고문: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고 본회 발전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할수 있다.

7 조 임원회의 기능: 의결 심의 사항은 다음에 같다.

제 1 항: 총회 및 이사회 보고 사항

제 2 항: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제 3 항: 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 심의

제 4 항: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8 조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이사장, 총무으로 구성되며 긴급 문제안을 토의 결정한다. 재정 지출면의 긴급 토의 결정은 \$1000 이상으로 한다.

9 조 감사:

제 1 항: 감사는 2 명으로 하며 본회의 직책을 맡지 않은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다.

제 2 항: 감사는 매년 재정 및 행정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문서에 관한 적법성과 견해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때 서면 보고한다.

제 3 항: 궐위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총회

1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시기는 11 월 또는 12 월에 소집한다.

2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정회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했을 때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조 총회의 성립:

정기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정족수가 되지 못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때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소집되어야 한다. 총회에 대한 공지는 총회 개최 2 주전에 한다.

4 조 총회의 기능:

제 1 항: 사업 및 결산 보고

제 2 항: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 보고

제 3 항: 감사 보고

제 4 항: 정관 개정 및 재정 보고

제 5 항: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제 6 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1 조 목적: 본 회의 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참신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동포사회의 모범이 되는 선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0 일 전에 구성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 1 명, 선거 관리 위원 2 명으로 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선거관리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항: 선관위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의결은 재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항: 선관위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한다.

제 4 조 윤리규정: 선거관리 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 선거운동 개입 금지

2 항: 입후보자 추천권 잠정 유보

3 항: 업무 수행중에 취득한 기밀 누설 금지

제 5 조 선관위의 직능

1 항: 선거관리 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2 항: 선거 일정 및 장소 공고

3 항: 입후보 등록 (공고, 구비서류등) 절차

4 항: 선관위 운영예산 집행 결산

5 항: 입후보자 공탁금 관리

6 항: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심사 및 유권자 확인명부 작성

7 항: 투/개표 안전관리 (검표, 산표 등)

8 항: 당선자 확인 공고

9 항: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제 6 조 등록공고: 선관위는 투표 30 일 전에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후, 선관위는 본장 10 조에 의거한 유권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 7 조 기호추첨: 입후보자 등록 완료후 72 시간 내에 선관위원장은 각 후보자(대리인)를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주지시키고 기호는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추첨에 의해 기호 결정을 한다.

제 8 조 선거운동

- 1 항: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체로 한다.
- 2 항: 입후보자 소견 발표 등의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고 결정한다.
- 3 항: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의 약력과 정책공약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성하여 유권자 (본회 정회원) 들에게 배포한다.
- 4 항: 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등록 명부를 선관위로 부터 교부 받을 수 있다.

제 9 조 투표방법, 일시 및 장소

- 1 항: 투표는 유권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 2 항: 선거일 3 주전까지 투표일시 및 장소를 선관위에서 본 회칙에 의거해 공고한다.
- 3 항: 유권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통해 정회원 확인을 받고 난 후 선관위에서 정하는 투표권을 받는다.
- 4 항: 본인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 입후보 양측 또는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 투표에 참가 할 수 있다.

제 10 조 선거 인명부 열람: 본회의 정회원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성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문의, 확인, 열람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1 조: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그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2 조: 본회 회원, 임원, 이사, 어느 누구도 어떤 형태로든 본회로 부터 발생하는 그 어떤 소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사업수행 목적으로 인한 경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서류 첨부로 본회의 재정으로 부터 추후 정산할 수 있다.

3 조 포상 및 징계:

제 1 항 포상: 본회는 본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존경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이사회인준을 받아 포상한다.

제 2 항 징계: 본회는 이사 및 임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인 업무 방해, 험담, 유언비어 날조, 기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본회를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인준의 과반수 참석, 무기명 투표에 의해 2/3 의 찬성으로 직위 해제,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한다. 공금횡령자는 즉시 전액을 반납시켜야한다.

제 8 장 수정안

이사회에서는 필요시, 정관을 삭제, 또는 첨부함으로 합법적인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수정안은 이사회 모임 7 일 전 서면 통보로서 1 회의 이사 모임을 갖고 논의되며,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 채택후 2 개월내에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산

본회의 해산 시, 해산과 함께 모든 재무를 변제한 후 잔여 재산은 자선단체나 본회의 취지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텍사스주 아마릴로 지역 내 기관에 양도하도록 한다.

제 10 장 부칙

1 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조: 본 정관은 총회 인준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